

금광동 295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고시(3차)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95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하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성 남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금광동 295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950번지 일원

나. 면 적: 6,873.7㎡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미정

나. 준공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금광동 295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남수)

나.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46, 4층

5.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구역 변경(29.7㎡ 증)

- 변경전: 6,844㎡ → 변경후: 6,873.7㎡

나. 조합임원 변경(연임)

다.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조합원 수 변경

라. 조합원 변경

하천점용허가(변경)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9일

중 원 구 청 장

1. 하천 명칭: 탄천(지방하천)
2. 점용자 명칭: 건창산업개발(주) 안강승
3. 점용자 주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 19, 대현테크노월드 705호
4. 점용 목적 및 개요: 탄천고가교 하자보수공사
5. 점용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
6. 점용 면적: 일시 300㎡
7. 점용허가기간
 - 당초: 2024. 7. 29. ~ 2024. 8. 10.
 - 변경: 2024. 7. 29. ~ 2024. 9. 10.

야탑역 광장 내 불법행위(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노점상행위 및 관련물품 적치 등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자진철거 명령)를 의무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9.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 공고내용: 야탑역 광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4. 8. 9. ~ 2024. 8. 23.(14일간)
- 공시송달 대상(불법행위 현황)

연번	위 치	행위자	불법행위현황	비 고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9-5 및 364-2	미 상	노점상행위 및 관련 물품 적치 등 공유재산 무단점유	

- 공고장소: 게시판 및 관보(시보), 성남시 홈페이지
- 문 의 처: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2팀(☎031-729-8091)

6. 공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노점상행위 및 관련물품 적치 등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자진철거 명령)하오니 2024. 8. 26.(월)까지 자진정비(노점수거 등) 및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미이행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분당구청에서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 등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2팀(☎031-729-80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제2024- 호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명(단체명)

귀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9-5 및 364-2

귀하 소유의 아래 인공구조물(건축물, 장애물 등)을 철거하도록 자진정비 안내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미관과 보행자 통행 불편, 가스 안전사고 위험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4년 7월 4일까지 반드시 노점 철거 후 원상회복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 고 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분당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 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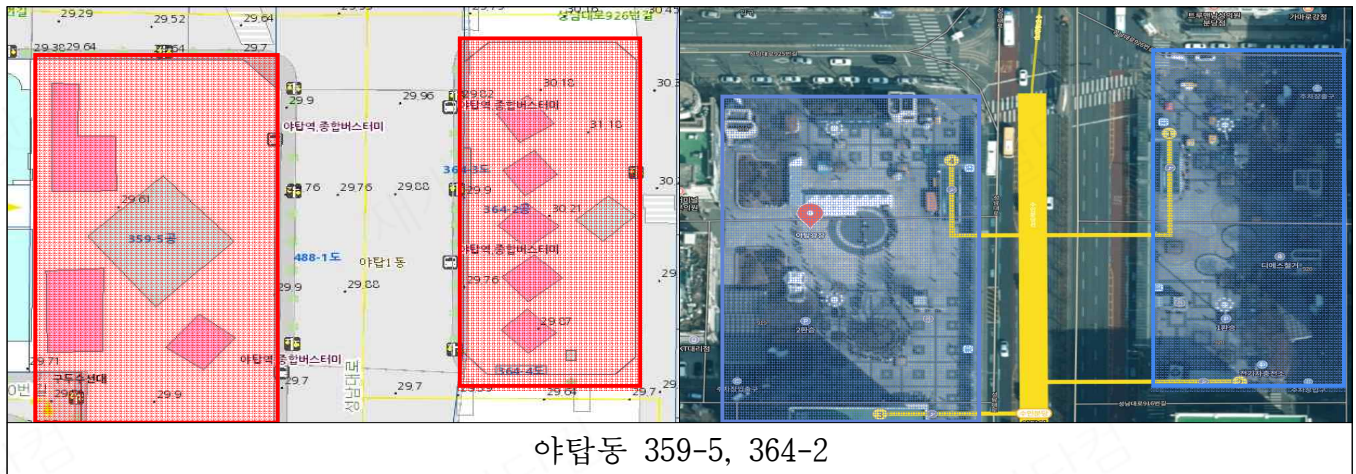
- 아 래 -

연번	위 치	행위자	불법행위현황	비 고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9-5 및 364-2	미 상	노점상행위 및 관련 물품적치 등 공유재산 무단점유	

2024 년 8 월 9 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 위치도



☐ 현장사진



※ 현장사진 외에도 공고 주소지에 무단으로 적치된 노점행위 관련물품은 행정대집행 대상 이오니, 기한 내 반드시 자진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역 광장 내 불법행위(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노점상행위 및 관련물품 적치 등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자진철거 명령)를 의무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9.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 공고내용: 판교역 광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4. 8. 9. ~ 2024. 8. 23.(14일간)
- 공시송달 대상(불법행위 현황)

연번	위 치	행위자	불법행위현황	비 고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3	미 상	노점상행위 및 관련 물품 적치 등 공유재산 무단점유	

- 공고장소: 게시판 및 관보(시보), 성남시 홈페이지
- 문 의 처: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2팀(☎031-729-8091)

6. 공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노점상행위 및 관련물품 적치 등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자진철거 명령)하오니 2024. 8. 26.(월)까지 자진정비(노점수거 등) 및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미이행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분당구청에서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 등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2팀(☎031-729-80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제2024- 호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명(단체명) 귀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3

귀하 소유의 아래 인공구조물(건축물, 장애물 등)을 철거하도록 자진정비 안내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미관과 보행자 통행 불편, 가스 안전사고 위험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4년 7월 4일까지 반드시 노점 철거 후 원상회복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 고 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분당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 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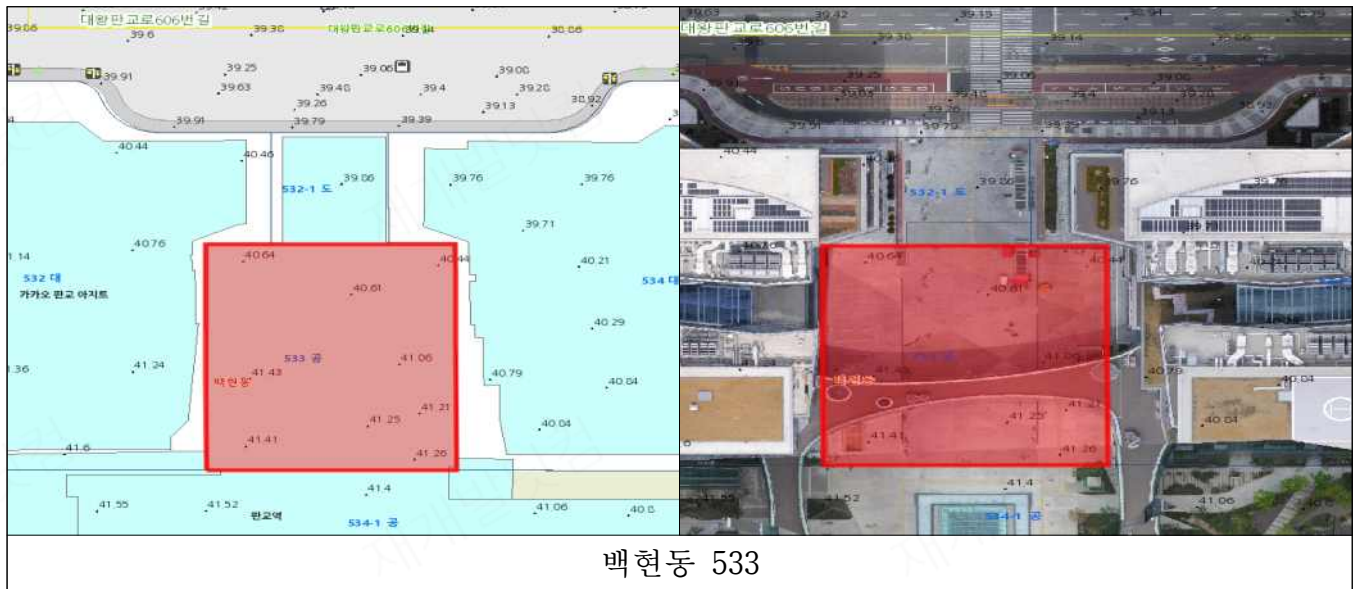
- 아 래 -

연번	위 치	행위자	불법행위현황	비 고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3	미 상	노점상행위 및 관련 물품적치 등 공유재산 무단점유	

2024 년 8 월 9 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 위치도



☐ 현장사진



※ 현장사진 외에도 공고 주소지에 무단으로 적치된 노점행위 관련물품은 행정대집행 대상 이오니, 기한 내 반드시 자진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